



#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

전문공보관 인권보호관 최인상  
전화 053-570-4420  
팩스 053-570-4242

## 보도자료

2021. 11. 8.(월)

### 제 목 대구 ○○요양원 코로나19 집단감염(3명 사망) 사건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기소

####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 등 (제11조 제1항)
-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(제11조 제2항 제3호) 제7조 제1,4호의 공개금지정보
- ※ 2021. 11. 5.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배포되는 자료임

- 금일(11.8.)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1부(부장검사 황우진)는 2020. 8. 12. 서울 △△교회 예배에 참석한 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도 검사결과 회신 전에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채 대구 ○○요양원에서 고령의 피해자들을 마스크 없이 대면하고, 나아가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시 이를 은폐함으로써 ○○요양원 피해자 10명에게 코로나19를 감염시켜, 그 중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A 및 그 배우자인 위 요양병원 운영자 B를 각각 감염병예방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불구속 기소하였음
- 의료 전문가의 자문, CCTV 영상 감정 등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및 사망 등에 대한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여 감염병예방법위반과 함께 업무상과실치사상까지 기소한 최초의 사례

# 1

## 사건 개요

### ● 피고인

- A (64세) : ○○요양원 시설관리자
- B (53세) : ○○요양원 운영자, A의 배우자

### ● 공소사실 요지

#### [피고인 A]

- 2020. 8. 12. 서울 △△교회 참석자로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를 받고 2020. 8. 16. 09:50경 코로나19 검사 후 ○○요양원을 방문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지침을 위배한 채 고령의 입소자들을 대면하여 (같은 날 20:00경 코로나19 확진판정) 2020. 8. 19.부터 2020. 8. 26.까지 입소자 중 10명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게 하고, 그 중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**【업무상과실치사상】**
- 2020. 8. 16. 위와 같이 ○○요양원에 방문하여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고1), ○○요양원 방문 사실을 숨기는 등 역학조사 방해하여2) **【감염병예방법위반】**

#### [피고인 B]

- B는 A가 자가격리 대상자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검사결과 회신 전에 A가 ○○요양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지침을 위배한 채 고령의 입소자들을 대면하도록 하여, 위와 같이 입소자 중 10명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게 하고,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**【업무상과실치사상】**
- 역학조사관에게 A의 ○○요양원 방문 사실을 숨기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하여 **【감염병예방법위반】**

1)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(법률 제17475호) 제79조의3 제5호, 제47조 제3호

2)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(법률 제17475호) 제79조 제1호, 제18조 제3항

## 2

## 수사 경과

- '20. 8. 21. 대구광역시, A에 대하여 감염병예방법으로 고발
- '21. 4. 22. 대구서부경찰서, 사건 송치
- '21. 5. ~ '21. 11. 관련자 조사, CCTV 화질개선, 의료자문 등 보완수사
- '21. 11. 8. 불구속 기소

## 3

## 수사의의 및 향후계획

- 본 건은 고령의 요양원 입소자들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감염시키고,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하여 역학적, 법률적 인과관계 규명하여 감염병예방법위반죄와 함께 업무상과실치사상죄까지 의율하여 기소한 최초의 사례
-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, 심리상담 지원 등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☑